

『2025 경기도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긴급모집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2025 경기도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긴급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업 유의사항(필독)

본 사업은 해외 현지(UAE-두바이, 튀르키예-이스탄불)파견 사업으로 반드시 기업별 국내 담당자가 해외로 출장이 필요하며, 출장에 필요한 제반 비용(항공료, 현지 체류 체제비 등)은 참가기업 부담이므로 사업지원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5 경기도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2025년 10월 19일(일) ~ 10월 25일(토) 5박 7일

※ 파견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항공 및 현지 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다. 파견국가(지역): UAE(두바이), 튀르키예(이스탄불)

라. 상담품목: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등 의료바이오 분야

마. 상담방법: 현지 바이어와 개별상담(단체 수출 상담장 운영 또는 바이어사 방문)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경기도 의료바이오 기업 00개사

나. 지원내용: 항공료 50%(기업1개사 1인, 최대 110만원 한도),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수출상담장 제공, 전문통역원(업체당 1인). 현지 단체 버스 이동비용

※ 나머지 항공료, 체재비, 파견제품 샘플운송료,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 계획된 단체 항공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개별 발권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과거 경기도 및 본 센터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선정 후 참가포기시 1년 동안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에서 제외

4. 신청기한: 2025년 9월 3일(공고일) ~ 2025년 9월 12일(금) 15:00 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http://www.egbiz.or.kr\)](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하단)‘분야별지원사업’카테고리 클릭 후 ⇒ ‘수출’ 카테고리에서 “2025 경기도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경기기업비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 ①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1년 이내 발급)
- ② [필수]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③ [필수]신청기업 현지 시장성평가자료(별첨 엑셀파일 sheet 1, 2 모두작성)
- ④ [필수] 외국어(영문, 또는 현지어) 카탈로그 (시장성평가 시 활용)
-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 ⑥ 공장등록증 사본(신청서 내 공장 정보 반드시 제출, 1년 이내)
- ⑦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한 면)
- ⑧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
여기업, 주 4.5일제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기업비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해외규격인증서(붙임2의 경기도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표만 해당)

⑩ [필수]2024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① 온라인: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② 오프라인: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⑪ [필수]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여부 약약서

※타기관에 제출한 서류 인정 불가. 반드시 [별도 첨부된 붙임] 양식에 신규 작성하여 제출

○ 경기도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방법

- IV 납세 부분은 신청기업이 직접 발급하여 지원사업 신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
해야 하며, I 공정, II 노동, III 환경 분야 법 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는
신청 이후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직접 조회함(아래 표 참고)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I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류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조회발급 (조 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의결 조회, 법 위반 사실 조회
II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비청 법 위반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발급 (조 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
III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조 회) 기업소재 관할 시군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IV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다. 시장성평가 단계를 위한 요청사항(필수제출)

- ① 별도 첨부된 ‘시장성평가자료(엑셀)’ 엑셀sheet1, 2 모두 작성
- ② ‘별첨파일(첨부파일)’란에 상기 시장성평가 자료 첨부
- ③ 외국어 카탈로그 첨부

※ 상기 자료는 첨부한 외국어 카탈로그와 같이 현지 시장성평가 단계에서 현지 운영기관에 송부되어 평가 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성실히 입력 바랍니다.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2025년 9월 19일(금)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및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사업 변경 또는 사업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경기기업비서 또는 FTA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선정기업 별도 연락예정)

7. 추진일정

- 가. 참가기업 모집: 공고일 ~ 9월 12일(금) 15:00까지
- 나. 현지 시장성 평가: 2025.9.12.(금) ~ 2025.9.18.(목)
- 다. 참가기업 선정: 2025.9.19.(금) 예정
- 라. 사전 설명회: 2025.10.15.(수) 예정
- 마. 바이어 상담주선 마케팅: 2025.09.19.(금) 예정 ~ 상담 전일 까지
- 바. 현지파견: 2025.10.19(일) ~ 10.25.(토)

※ 상기 추진일정(안)은 국내외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8. 기 타

- 가.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동점기업 발생시 시장성 평가점수를 우선으로 함

나.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道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다. 신청서 허위 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불입3]의 양식**에 따라 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경기FTA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제한 원칙>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단, 既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가능

- 참가 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지원제한 면제>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 (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나. (해외파견시)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 통관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이우혁 주임보 ☎ 031-8064-1387, Email. qwe23232@gsmba.kr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9월 3일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붙임1]

2025년 경기도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계			100
기업 기본 (40)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10)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10)	20
	국내특허 취득 ¹⁾	특허 2점 / 건	10
시장성 (60)	통상촉진단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60
가점 (최대 15)	해외 규격인증 획득 ²⁾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최대)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5) 성과공유 확인기업(5) 면접수당 지급 기업(1) 주 4.5일제 시행 경기도 인증 기업(2) 기업 re100 참여기업(2)	10 (최대)
	전년도(2024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5) 2천만불 초과 ~ 2,500만불 이하(3) 2,500만불 초과 ~ 3천만불 이하(1)	5 (최대)
참가제한 및 감점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을 1회 이상 위반한 기업		평가 총점의 20% 감점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 20점
기타	평가 결과 총점이 동일한 기업이 발생할 경우, 시장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함		-

1)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87개(별표1)

[붙임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 대상(총 387개)

※ '23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 지원 대상 준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미국 (71)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T (미국운수성)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 생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트유해물질 누설인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Green Seal (친환경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 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 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Warnock Hersey Mark)
	Proposition 65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	CF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유럽 (30)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 프지침)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EU 2092/91 (EU의 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 에 대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GL (독일선급협회)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 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영국 (11)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UKCA (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SCPN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의 소비자보호 및 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일본 (27)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PAL → PMDA(일본의료기기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러시아 (10)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우크라이나 (1)	Uni Cert→우크라이나 적합성인 증		
말레이시아 (3)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
멕시코 (3)	COFETEL →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칠레	SEC(칠레에너지관리국)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1)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대만 (6)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태국(2)	태국 식약청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튀르키예(1)	TSE (튀르키예 강제인증)	-	-
싱가포르 (5)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PSB → CPS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12)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DCG인도식약청	IRS (인도선급인증)
	IBR (인도 보일러 규정)	RDSO (인도 철도인증)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인도네시아 (3)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30)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구.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중국위생허가 포함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V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GB-Test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중국 유기농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EL (China Enegy Label, 중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국제에너지라벨 효율등급)	관리제도)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두바이(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캐나다 (8)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CSA (캐나다표준규격)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폴란드 (2)	B mark	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필리핀 (3)	ERC	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Import Commodity Clearance)
라오스(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8)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Viet 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호주 (12)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 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이란(2)	ISIRI (이란 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아랍에미레이 트(2)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ECAS (아랍에미레이트 강제인증)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국제 (80)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 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SIG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	BRCFOOD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블루투스제품인증)	보목적의인증)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 장재 승인 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SC (국제산림관리협회의)
	FTC (화염시험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 증)
	ISO7096 (토공기계간관련진동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 에 대한 축적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구격)	NON GMO
	OCS (유기농섬유인증)	OK compost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 규격)
	PDI (배관,배수 인증)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CC (중동적합성 마크)	IHE Connectathon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UN 38.3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FIDO (생체인증)	Wi-Fi Certified (Wi-Fi 상호운용성인증)
	ZDHC (유해화학물질제로배출협회) (Zero Discharge Hazardous Chemicals)	RCS (Recycled Claims Standard)	Gluten Free Programs (글루 텐안전인증)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RWS (Responsible Wool Standard)	-

☐ **참가신청 내역**

지원사업명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신청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주소			
포기사유			

당사는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5 경기도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참가를 포기합니다.

아울러 참가신청 포기로 인한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참여제한 조치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귀하